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033
----------	------

2022년 2월 14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19일, 전병주 의원 외 1명
-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2년 2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전병주 의원)

1. 제안이유

-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인성교육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11조).

마. 교원연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 19일 전병주 의원 외 1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033호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내면을 바르고 건
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인성교육’ 이란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등의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뜻하는 것으로¹⁾, 「교육기본법」 등에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²⁾
-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의 인성 함양이라는 교육의 기본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사

1) 네이버 국어사전

2)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지식교육’ 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지난 2015년 1월 국회에서는 인성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이 타인을 배려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³⁾
-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인성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 왔습니다.

[표-1] 각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7. 3. 31.
2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2015. 10. 13.
3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5. 1. 29.
4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5. 12. 31.
5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2012. 12. 28.
6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6. 5. 20.
7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5. 1. 1.
8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5. 8. 5.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5. 11. 10.
10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6. 3. 31.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6. 4. 4.
12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6. 3. 10.
13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2015. 5. 29.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5. 11. 24.
15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6. 4. 11.
16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016. 9. 23.

3) 2015.1.20. 제정, 2015.7.21. 시행.

- 이러한 면에서 동 조례안도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생이 인성교육을 통하여 타인과 조화롭게 생활하는 능력을 갖추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교원연수(안 제12조) 등을 규정하여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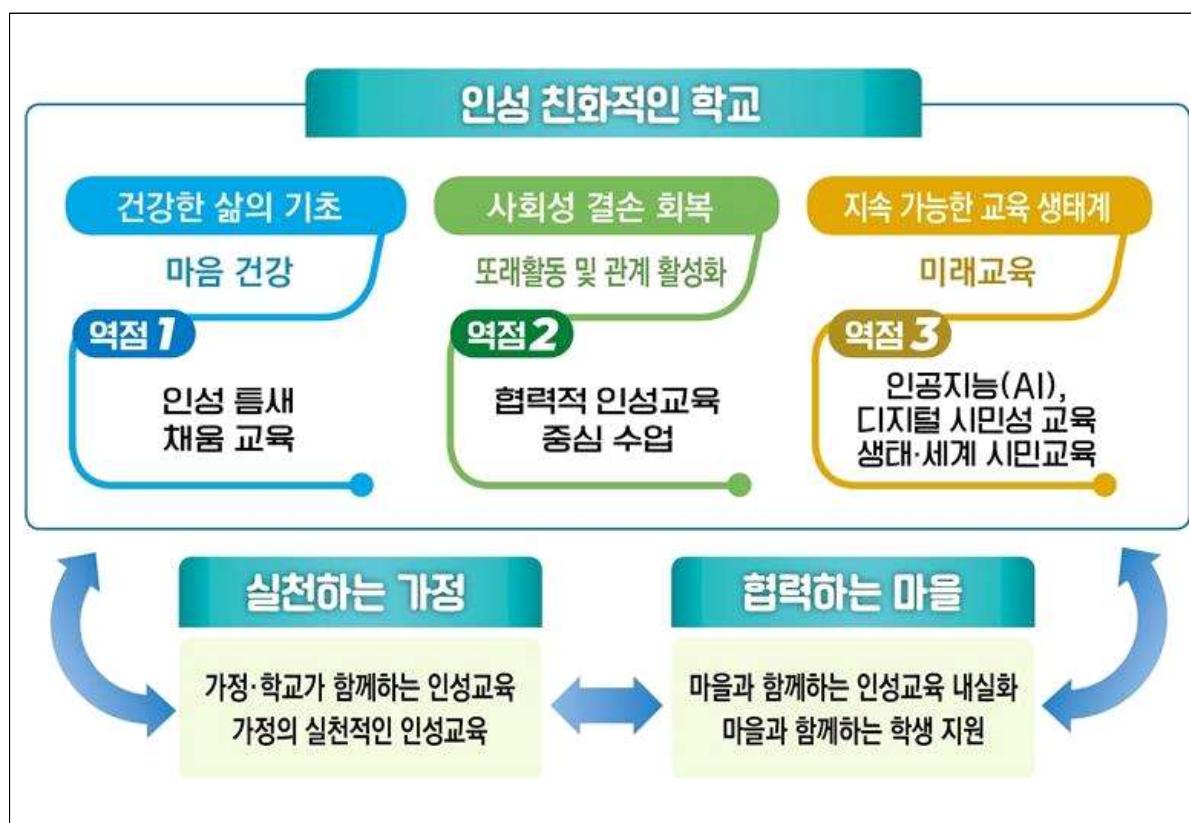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①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②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③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④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11월 ‘2022 서울인성 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초등교육과-16230, 2021.11.22.)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림] ‘2022 서울인성교육 시행 계획’ 추진 체계도



[표-2] 서울시교육청 인성교육 홍보방안

□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안내 및 홍보(교육청)

- 자녀 양육 고충해소를 위한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대공감 모바일톡(Talk) 개설
- 가정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가정 내 인성교육 실천 사례집 개발 및 배포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상기의 [표-2]와 같이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바,
안 제3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성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입시·성적 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인성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대한 검토(안 제5조~제11조)
-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시·도 인성교육진흥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⁴⁾,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성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각 시·도 교육청 인성교육 관련 조례의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규정 사항과 비교 시 특별한 상이점은 없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3] 각 시·도교육청 조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주요 규정 사항

교육청	위원 수	위원장	부위원장	수당 지급 규정
서울	7~9명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강원	9명 이내	교육국장	위원 중 호선	O
경기	7~9명	제1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경남	7~9명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경북	11명 이내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O
광주	7~9명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대구	15명 이내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대전	11명 이내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X
부산	15명 이내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세종	11명 이내	업무담당부서국장	위원 중 호선	O
울산	11명 이내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인천	9명 이내	미래교육국장	위원 중 호선	O
전남	11명 이내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전북	15명 이내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X
제주	15명 이내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충남	7~9명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충북	7~9명	부교육감	위원 중 호선	O

- 다만, 인성교육진흥협의회가 심의·의결기구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교원연수에 대한 검토(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4] 서울시교육청 교원 인성교육 지도역량 제고 방안

□ 인성교육 지도역량 제고

- [전체] 인성교육을 주제로 하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연구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학교 내 1팀 이상, 학교 간 인성교육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권장
 -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중심 수업 방법 연구 및 수업 모형 개발
 - 자발적 인성교육 중심 수업 공개·나눔으로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 인성교육, 인문 독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필수] 교원 인성교육 관련 연수 이수(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연간 1시간 이상 이수
 - 직무연수, 자율연수, 학교계획에 따른 학교 단위 연수, 워크숍 등
 - 행정직, 방과후 강사, 교육공무직 등도 학생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2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에서 교원 인성교육 지도역량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는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에서 교원연수의 이수기준을 연간 1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교원연수에 대한 상위법령상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⁵⁾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액은 연평균 468만원으로 교육청의 수용 가능 범위인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02, 2022. 1. 28.).

5)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③ 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시간 이상보다 강화된 교원연수 이수기준을 각각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 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